

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2

제 안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사유

-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全文改正('95. 12. 6 법률 제4993호)
- 내무부의 '수방단 운영조례 개정표준(안)' 시달('96. 7. 24)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함.

□ 주요글자

- '풍수해대책법'을 '자연재해대책법'으로 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에 수방단을 참석토록 함 (안 제1조, 제2조 4호)
- 시장이 수방단장을 임명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(안 제4조 제1항)
- 수방단 소집시 소집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것을 삭제하고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함 (안 제6조 제2항)

□ 참고자료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
-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, 제14조, 제15조
- 동법시행규칙 제2조
- 수방단 운영조례개정 표준(안) - 내무부

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산 시 수 방 단 운 영 조 례
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안산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
3.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(단장)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

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
- 가. 주민대피 유도
- 나.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
- 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- 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- 마.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
2. 복구반 : 30명 내외

- 가.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· 정비
- 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
- 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- 라. 재해지구의 정리 · 정돈

3. 구호반 : 10명 내외

- 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- 나. 사망자,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
- 다.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실시
- 라.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·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수방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안산시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